

# 약대 학제연장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 Focus

글·정인과  
고려의대 정신과 교수(의협 기획이사)

## I. 머리말

지난 8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약학대학 학제로 「완전개방형 2+4체제」를 도입하여 2011학년도부터 실시하며,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완전개방형 2+4체제」는 우리나라에 없는 학제일 뿐만 아니라 약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과정은 6년이지만 약대학과정은 4년이라는 상충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행령개정이 아닌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현재 교육부와 팽팽한 법령해석을 다투고 있는 상태이다. 의협은 약사들이 공부를 더 하고자 한다는 문제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이 아니며, 약사가 공부를 더 해서 국민 보건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다만, 의료계가 약대학제 연장의 문제에 대해 반대의

견을 제출하고 반발하는 것은 약계의 학제연장 주장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국민보건 및 의료질서를 훼손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올바른 절차와 관련근거 및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일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본고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약사(藥事)제도의 미래발전 방향을 위해 약사제도가 약대 학제문제를 빌미로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약계 주장의 문제점, 의료계의 반대이유, 사회경제적 문제, 의료계 향후대책을 기술하였다.

## II. 약계 학제연장 주장의 문제

약계가 학제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관련 근거가 부실하여 90년대에는 양약·한약 모두를 다루는 통합약사, 2000년대에는 1차 진료를

하는 임상약사식으로 목표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낮아, 정책으로서 합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그것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약대 학제연장과 관련된 교육학적 타당성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학제연장의 교육학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4년제 학제내에서의 문제점 파악과 이에 관한 해결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약계내부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행 약대교육은 교육목표의 불명료성, 교과과정 편성의 후진성, 교육여건의 열악성, 약사국시의 후진성 등 수많은 교육학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것만 개선하더라도 학제연장 없이 정책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 대부분의 견해이다. 이는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인 홍후조교수의 “약사(藥事)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제개선 방안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약학대학 커리큘럼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의 교과목이 영국에 비해 17과목, 캐나다에 비해 25과목, 미국의 2+4년제에 비해 교과목수가 2배에 가까우며 무려 35과목이 더 많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약사들은 공부를 더 하겠다는데 왜 의사가 반대하느냐고 반박하기 전에 순수한 향학열임을 증명하는 자체 노력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약사들은 전국적인 규모의 약대교육 실태조사조차 수행한 바가

없고, 약학대학원 진학률은 5%에 그치고 있다.

셋째, 약대 6년제를 주장하면서 정작 중요한 약대 6년제 교육목표나 커리큘럼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약대 6년제를 주장한다면 어떠한 약사를 만들기 위해 어떤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약계 내부에 합의되어 공식문건으로 제출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없이 약대 6년제를 주장하는 것이 가당한가? 라는 것을 약계에 묻고 싶다. 결국 약계는 2003년 10월 의협의 문제제기에 의해 약계가 이를 줄속으로 부랴부랴 작성하는 해프닝까지 연출했다.

넷째, 실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병원약사수련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에 관한 검토가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약사들은 현행 교육은 실습교육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현재 일부 병원에서 하고 있는 병원약사수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거나 이를 면허의 요건에 포함하면 손쉽게 해결될 문제다.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학제연장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그렇다면, 약계가 이렇게 모순되는 이유를 내세워, 끊임없이 학제연장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학제연장을 통해 표면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 III. 의료계가 약대학제연장을 반대하는 이유

의료계가 약대 학제연장을 반대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의 의료환경에 연유되며, 의료계는 이번 학제연장이라는 논의의 장을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결말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사실, 의료계가 약대학제연장을 반대하는 것은 약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대한약학회는 ‘21세기 약학교육의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약사가 지난 60년간 약국에서 1차 진료를 시행해 왔던 사실을 다시 꺼내어, 이것을 21세기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런 이유로 약학대학은 6년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마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보건 의료종사자는 없을 것이다.

둘째, 교육부의 약대 학제개편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홍후조 정책연구팀에 참여한 숙명여대 신현택 교수는 약계의 대표적인 약대 6년제 도입주창자인데, 그는 약대학생들에게 “약료”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의사의 진료 영역에 약사가 1차 진료를 담당해야 한다며 빼돌어진 교육관을 계속 약대생에게 심어주고 재생산하고 있다. 약사가 자신의 본연의 직무를 중심에 두지 않고, 온 약계가 한 덩어리로 뭉쳐, 의사의 직무에 기웃거리는 그 저의는 과연 무엇일까?

셋째, 2004년 9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도 약계는 은밀히 계속 비제도권 1차 진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약사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약사의 불법임의조제에 대한 약사법상의 경미한 처벌이 오히려 약사의 불법임의조제를 불러 오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약계가 조금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 처벌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비해,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한 약사법 처벌기준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우리나라 약사의 의식구조가 5~60년대의 불법임의진료에 대한 향수를 집단적으로 그리워하는 후진성에 매몰되어있고 있고, 몰래 하는 불법임의 조제가 근절되지 않는 한, 그리고 법률적 모순점에 대한 해결노력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약대학제의 문제에 대한 돌파구도 쉽게 만들어 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IV. 사회 · 경제적 문제점

약대 학제연장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2005년에 발표된 (주)미디어리서치의 “입시제도 및 대학학제 변경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약대학제연장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은 70.5%가 반대하고 찬성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반대 이유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상실과 국가적 인력 및 자원낭비를 들고

있으며, 또한 약대학제가 연장될 경우 ‘의료수가 상승(39.7%)’, ‘약사인건비 인상(33.2%)’ 등 경제적인 문제를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약대 학제가 연장되면 저소득층 학생들의 약학대학 진학에 제약 요소가 발생하고, 고등교육 기회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생각되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급속한 학력인플레이의 부작용을 직접 겪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이라는 점에서 명분없는 학력인플레이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풀이된다.

또한 약대 학제연장은 또다른 갈등을 초래할 소지를 안고 있다. 약대 6년제의 정책목표의 불명료성으로 이미 90년대에 한의계가 통합약사의 음모가 있다는 이유로 제일 먼저 반대하였고, 2000년대에는 임상약사에 대한 우려때문에 의료계의 반발을 자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한약계의 직접적인 단체행동과 의료계의 거센 투쟁을 익히 경험하였다. 그런데 약대 학제연장은 약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타 직종에도 학제연장을 촉발하는 신호탄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국가적으로 커다란 폭발력이 있는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권과 행정관료가 보다 많은 책무성을 갖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 V. 향후 대책

교육부는 약대 학제와 관련하여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5일 이른바 국사편찬위원회 공청회를 강행하고, 8월 19일 기자회견 및 보도자

료를 통해 약학대학 학제로 ‘완전개방형 2+4체제’ 도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4체제는 우리나라에 없는 전혀 새로운 학제(이것만으로도 법률개정 요인이 발생되었음)이고, 이 제도는 기존의 대학과 달리 고등학교 졸업자를 신입생으로 선발하지 아니하고 타대학 등에서 2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약학대학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약학대학은 입학이 허락된 신입생에게 4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약학대학의 교과과정은 4년으로 변함없는 대신, 다만 입학자격을 대학 2년 수료자로 명시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제33조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2+4체제학제 도입은 교육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시행령 개정으로 완성될 수 없고 의당 국회의원의 논의를 거쳐 모법인 고등교육법을 고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2+4체제에서 약학대학 전공교육 입문은 이미 대학에 입학한 학생중에서 약학교육 전공대상자를 선발하는 의미이므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편입학 및 전과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당초의 입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주장 또한 법률적 모순이라는 의료계의 재반박이 이어졌고, 교육부는 되풀이되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약대 학제연장 문제는 약계와 소모적 공방전의 단계를 지나 교육부와 의 「2+4학제」에 관한 정체성에 대한 논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관해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의료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의 약대 학제연장 추진정책이 원초적으로 잘못 시작되었다는 점을 꾸준히 설명하면서 지난 5~60년간 의약간에 존재 하였던 제도적 미비점과 후진성을 제거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이번 기회에 약사의 불법임의조제 관행을 단절시키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영구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고 국민에게 일반약의 올바른 선택방법과 선택권을 돌려주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좀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의협의 입장이다.

또한 이번 약계의 약대학제연장 추진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제개편과 관련하여 관련이익단체가 교육적인 자체노력이나 검토보다는 행정적·정치적 접근을 우선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대학의 수업연한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행정부의 독단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 VI. 맺는말

의료계는 약대 학제개편의 문제를 접하면서 약계가 학제개편의 당위성에 관한 학제개편의 궁극적인 목표의 불명료성, 교육적인 검토사항에 대한 준비결여, 기초자료의 왜곡 등 수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같은 왜곡이 일어날 수 있게 된 데에는 학제개편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에 의해 정치적 공세와 압박이라는 약계의 전략때문이었다.

또한 약대 학제개편의 문제는 우리나라 의약제도의 후진성으로 약계의 내부문제에 그치지 않고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 문제, 의약품 판매방식의 선진화 문제와 함께 맞물려 돌아가고 있으며, 약대 학제개편의 문제가 잘못 풀려 갈 경우 타보건의료인력의 학제연장 주장을 불러와 국민에게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부담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약대학제개편은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적 수단과 독단에 의해 처리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국민적인 합의와 고등교육법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와 약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KHA**